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매뉴얼

결재	작 성	검 토	승 인

작성일 : 2020. 02 . 08

▣ 목 차

1. 중대재해 정의

① 중대재해의 종류 및 의미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② 중대재해처벌법,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

2. 중대재해 대응 지휘체계

① 중대재해 대응 지휘 체계도

② 비상연락망(사내/관공서 등)

③ 상황실 인원별 임무

④ 중대재해 발생시 업무 절차

⑤ 비상 상황 방송 운영체계

3.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① 중대재해 상황별 초기 대응 요령

② 대·내외 대응 담당자 업무 절차

4. 중대재해 예방 관리

① 중대재해 대응 교육/훈련 계획 등

5. 유가족 대응 절차

① 장례 지원 절차

② 유가족 합의금 가이드라인

6. 치유와 회복

① 산업재해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회복 관리

첨 부

1. 사고 관련 자료 준비 리스트 (원/하청)
2. 산재 유족보상 합의서 양식
3.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4. 유족급여 신청서 양식
5. 요양급여 신청서 양식
6. 보상 관련 입증서류 준비 리스트

1. 중대재해의 정의

* 중대재해의 종류 및 의미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제2조 제2호)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비교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3조)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1. 중대재해의 정의

* 중대재해의 종류 및 의미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제2조 제3호)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비교 제조물책임법 상 제조물 책임

1) 제조물의 결함(제조, 설계, 표시상 결함)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

2)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의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 책임 부담

1. 중대재해의 정의

* 중대재해처벌법,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 **시민(이용자 등)과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등)**의 생명과 신체 보호	**목 적**	▪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
▪ **포괄적 위험 방지 의무 부여**	안전 의무 범위 **(의무 강화)**	▪ 구체적이며 명시적 안전·보건 조치 의무 부여 (산업안전보건기준)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시설, 장비, 장소**	도급사업 책임범위 **(범위 확대)**	▪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 및 제공·지정하는 장소로써 **지배·관리하는 장소**(21개)
▪ **경영책임자 등**(사업을 총괄하는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처벌 대상 **(중심 이동)**	▪ **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망사고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부상사고 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개인 처벌 기준 **(처벌 강화)**	▪ 사망사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부상사고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사망사고 : 50억 이하의 벌금 ▪ 부상사고 등 :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 처벌 기준 **(처벌 강화)**	▪ 사망사고 : 10억원 이하의 벌금 ▪ 그 외 위반 :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손해액의 5배 이하 범위내 배상 책임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	▪ 없음

2. 중대재해 지휘체계

* 중대재해 대응 상황실 인원 임무

담당자	역할명	주요 역할/임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표이사)	상황실장	• **의사 결정 총괄·지휘 (대피여부 판단 등)** • **2차 재해 방지차, 해당 공정 종사자 대피 지시** • 당사 피해복구 및 협력업체 피해복구 활동지원 지시 • 관련 관공서 사고조사 적극 협조 지시 • 대내/외 대응 담당자 지정	
상무이사	상황실 책임자	• **상황실장 부재 시 임무 대행 / 상황실장 지시에 따라 상황실 업무 총괄**	
관리지원팀장	상황실 관리자 (모니터링 / 보고)	• 상황실 운영 후 실시간 상황 정리 및 보고 • 인적/물적 피해상황을 종합하여 **상황실장,상황실 책임자에게 보고**	
안전 관리자 / 안전담당자	대내대응담당자	• **응급처치 및 병원 긴급 후송** •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사고 발생 조사 • **대외기관 대응 (고용 노동부 등)** • 발생 개요, 피해 상황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 **상황실장(대표이사)에게 즉시 보고**	① 재해발생보고서 작성 ② 사고 관련 자료 준비 ③ 노동부, 경찰 조사 대응 (3개월~6개월) ④ 민,형사상 합의 지원 (법률검토)
노무 담당자	대외대응담당자	• 유가족에게 사실 통보 • **병원 동행, 의사진단 파악** • **부검결과 체크** • **유가족 장례지원** • 민,형사적 합의 주관 } * 대응협조 • 전문변호사 • 노무사	※ 병원 도착 시, 의사의 [사망진단서 or 사체검안서] 발급 여부 확보 및 체크 - 사체검안서 발행 시 → 검사 지휘 하 1~2일 내 부검 부검(2~3h) : 부검의 → 형사 소견 전달 시 동석 또는 담당형사에게 부검결과 체크
현장 총괄	관리감독자	• **재해가 발생한 기계 정지 및 재해자 구출** • 재해자 인적사항 및 목격자 진술 확보 • 보고 및 **현장 보존**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 관리감독자 생산부(생산1팀, 2팀) 생산지원부(물류팀)

2. 중대재해 지휘체계

* 중대재해 발생시 담당자별 조치사항

구 분	중대재해 사고 발생 時
중대재해 발생 대응 상황실장 **(상황실장 부재 시 상황실 책임자가 임무 대행)**	▪ 사고/재해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확인/검토 ▪ 2차 사고/재해 예방을 위해 상황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 ▪ 사고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확인/검토 ▪ 상황종료 후 사후 대책 지시 ▪ 사외 대응 협의
최초 발견자 / 관리감독자	▪ 사고/재해상황 전파 및 응급조치 (인원/시설/장비) ▪ 관련 부서 (관리지원팀, 경비실, 현업 등)으로 유선 연락 ▪ 상황실장 지시 등 관리감독자 상황 판단에 따라 사고/재해 공정 부분대피 결정 ▪ 인명피해 발생시 응급조치 지원, 후송 ▪ 2차 사고/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출입 통제, 보존 ▪ 사고/재해 상황에 판단하여 관리지원팀으로 지원 요청 ▪ 재해규모에 의해 상황실 운영 판단 ▪ 상황 종료 후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보고
안전 관리자 / 노무 담당자 (대내대응담당자 / 대외대응담당자)	▪ **응급처치 및 병원 긴급 후송** ▪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사고 발생 조사 ▪ **사외 대응을 위한 조직 구성 및 기관 대응 진행 (경찰서, 고용 노동부 등)** ▪ 발생 개요, 피해 상황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 **상황실장(대표이사)에게 즉시 보고** ▪ **유족 장례 지원**
관련부서 (생산부,생산지원부 등)	▪ 사고 피해 복구 지원 ▪ 사고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협의 ▪ 상황종료 후 사후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2. 중대재해 지휘체계

* 중대재해 발생시 업무 절차

업 무 FLOW	중 대 재 해 발 생 時
	중대재해 발생 ① / 재해 조사 ② / 원인 분석 ③ / 개선 대책 수립 ④ / 개선 계획 ⑤ / 개선 조사 ⑥ / 평가 및 생산라인 정상화 ⑦
	긴급 자체 구호조치 / 중대재해 관련 관공서 사고 조사 협조

내 용			
	1	중대재해발생	기계 정지 → 재해자 응급조치 → 관계자 통보 (대표이사 및 관련 관공서) → 2차 재해 방지 (종사자 대피) → 현장보존
	2	재해조사	육하 원칙에 의한 사상자 보고 → 잠재 재해 원인 확인 (관련 관공서 사고조사 협조 必)
	3	원인분석	① 사람 (직접 원인) / ② 물체 (직접 원인) / ③ 관리 (간접 원인)
	4	개선 대책 수립	① 동종 재해 방지 / ② 유사 재해 방지
	5	개선 계획	수립된 대책의 실시 (육하 원칙에 따라)
	6	개선 조치	대책 계획의 실시
	7	평가	평가 및 생산라인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통한 작업중지 해제 신청)

2. 중대재해 지휘체계

*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절차

재 해 발 생 세 부 대 응	관련 관공서	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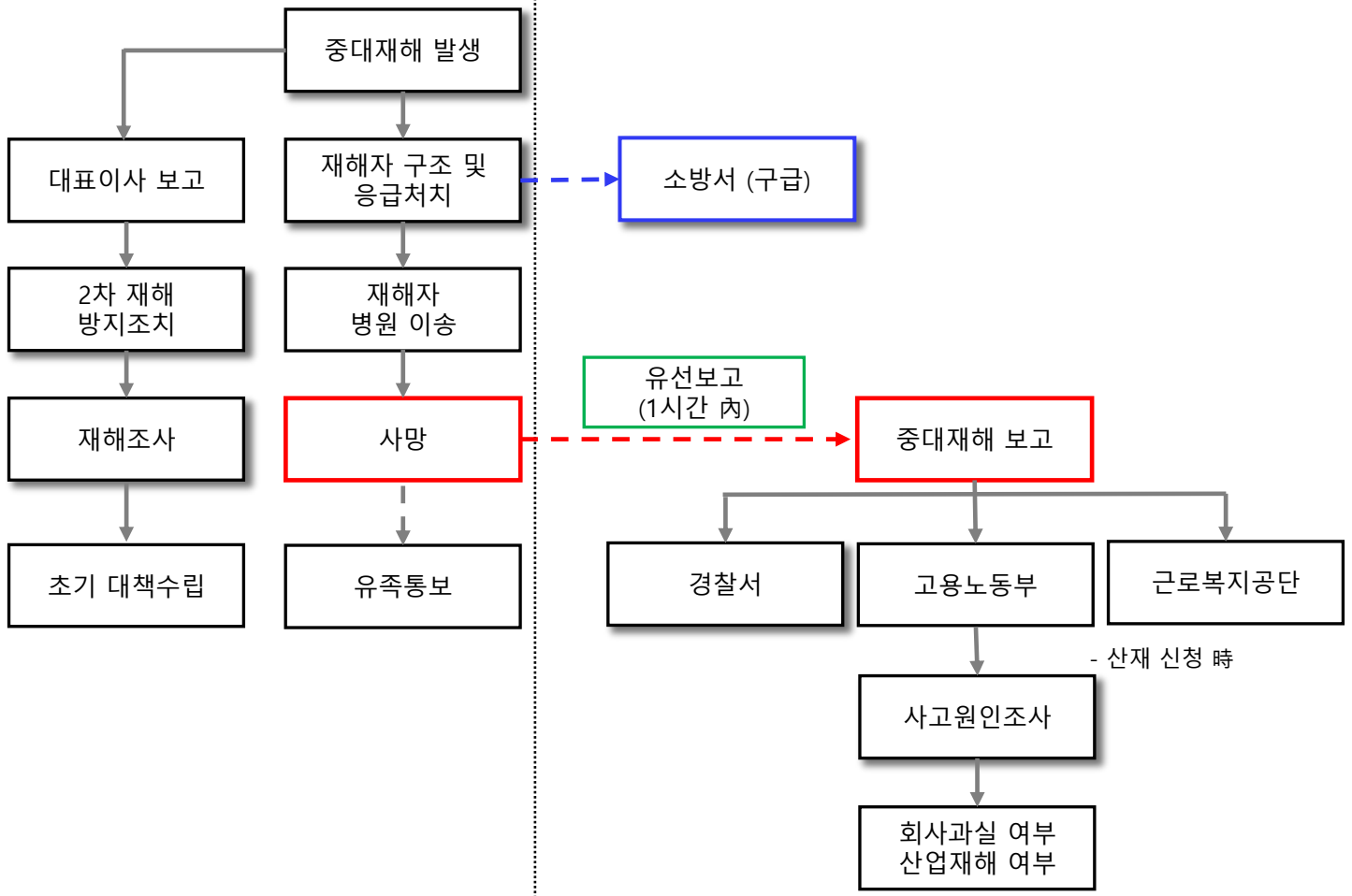

- 재해발생보고서
- 중대재해발생보고서
- 사고보고서
- 산업재해조사표

사고 재발방지 지속 모니터링

2. 중대재해 지휘체계

* 중대재해 발생시 세부 대응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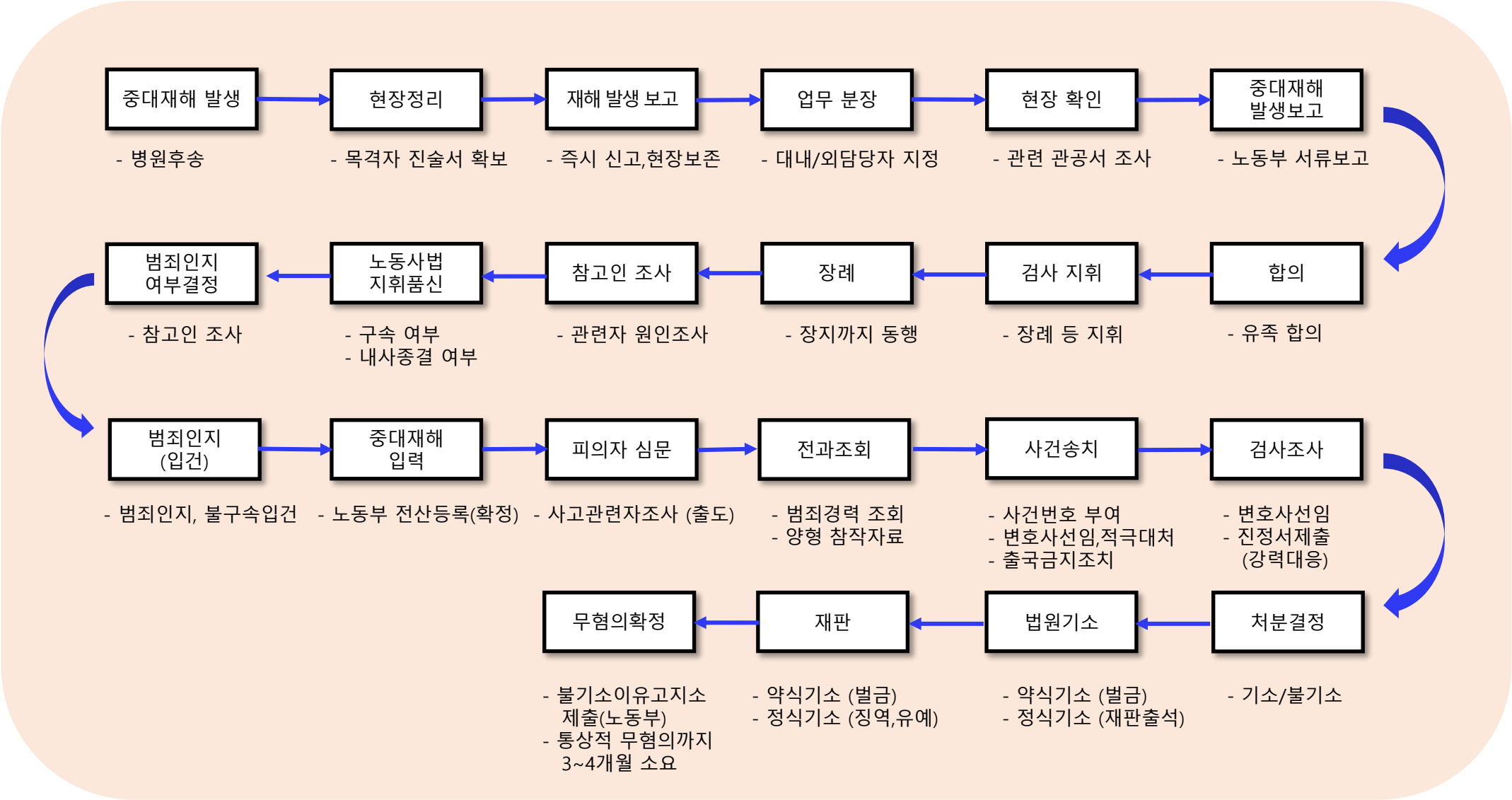

2. 중대재해 지휘체계

* 비상 상황 방송 운영체계

단 계		대 응	정보 전달	대응 내용	관리감독자	상황실 대응		해당 공정 직원
해당 공정	중대재해발생	관리감독자	중대 재해 상황 인지	• 중대재해발생 보고 / 기계정지 및 재해자 구출 • 재해자 응급처치 • 재해자 인적사항 및 목격자 진술 확보	보고/구출			
상황실	대피 결정 대피 발령	상황실장	중대 재해 상황 확인	• 의사결정 총괄·지휘 • 2차재해 방지차, 해당 공정 종사자 대피 지시		대피결정 대피발령		
관리지원팀	대피발령 전파	안전관리자	방송설비	• 방송설비를 통한 중대재해 발생 전파			방송설비 작동	
해당 공정	해당 공정 대피 실시	해당 공정 직원	-	• 해당 공정 직원 대피 실시				대피

※ 방송설비 작동 방법 (사용불가시 비상연락망 활용)

전원 버튼 클릭

마이크 사용

2. 중대재해 지휘체계

* 비상 상황 방송 운영체계 → 방송 전파

안녕하십니까. 에이치엘비㈜헬스케어 경영지원부에서 중대재해 발생 관련 내용 전파드립니다.
금일 OO 시 ○○ 라인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작업장 내 전 임직원께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행동지침을 안내드리오니,
전 임직원께서는 지침에 따라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라인은 2차 피해 방지차 전면 작업을 중지하며, OO 라인의 근무인원들은
현 시간부로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OO 휴게실로 이동하시어,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인 근무인원들을 제외한 인원들은 방송에서의 지침을 따라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OO라인의 관리감독자께서는 현장을 보존하여 주시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임직원께 행동지침 안내 말씀드립니다.
SNS나 언론매체를 통해 잘못된 정보나 불필요한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비상연락망 및 개별 문자메세지로 자세한 진행 경과 및 추가 지침 등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X 2회)

2. 중대재해 지휘체계

* 비상 상황 방송 운영체계 → 개별 문자 전파

안녕하십니까. 에이치엘비㈜헬스케어 경영지원부에서 중대재해 발생 관련 행동 지침 안내 문자 드립니다.
SNS나 언론매체를 통해 잘못된 정보나 불필요한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진행 경과 발생시, 비상연락망 및 개별 문자메세지로 자세한 경과 및 추가 지침 등을 안내 및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 진행경과

- ○월 ○○일 ○○시 : OO 공정 근무자, 중대재해 발생
- ○월 ○○일 ○○시 : 병원 이송
- ○월 ○○일 ○○시 : 사망 진단
- ○월 ○○일 ○○시 : 장례 절차 안내

■ 행동지침

- 목격자, 관리감독자에게 재해 관련 진술 협조
- 잘못된 정보 또는 불필요한 사항을 SNS 또는 언론매체에 전파 금지
- 변동사항 발생시 추가 안내 예정
- 현장 보존
- 별도의 지시 및 안내 전, 재해 발생 기계(설비) 사용 금지

3.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 중대재해 상황별 초기 대응 요령 → 1차 대응 (관리감독자), 2차 대응 (안전관리자)

상황별 초기 행동 요령	
감 전	즉시 전원 차단 및 작업 중지
질 식	작업 중지 및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화 재	초기 진화 실시, 진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히 대피
무너짐	작업장 내 기계 및 설비 정지, 2차 피해 발생 방지
기계·설비 끼임	재해발생 기계 및 설비 정지, 2차 피해 발생 방지
물질 누출	가까운 밸브 차단, 호흡기 및 피부 보호, 신속한 대피
인화성물질 누출	점화원 발생 억제, 접촉 금지

3.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구 분	응급처치	피해야하는 처치	병원 이송 / 내원
상처가 난 경우	① 깨끗한 물이나 식염수로 상처부위를 1-2분간 씻는다. ② 지긋이 압박하여 지혈을 유지하고, 깨끗한 천이나 거즈, 붕대로 감아준다.	① 소주 또는 된장 등의 민간요법을 피한다. ② 혈관의 수축을 일으켜 추가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얼음을 직접 닿게 하지 않는다. ③ 붕대 압박 시 과도하게 압박하지 않는다.	① 지속적으로 피가 나는 경우 ② 근육이나 뼈가 보일 정도로 깊은 상처 ③ 상처부위에 파상풍 등 염증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화상을 입은 경우	① 화상 부위의 옷을 잘라 제거한다. ② 흐르는 물에 10-15분 정도 충분히 열기를 식힌다. ③ 시간이지나면서 부종이 진행되면, 장신구 등을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미리 제거한다.	① 너무 차가운 물이나 얼음은 지양한다. ② 소주 또는 된장 등의 민간요법을 피한다. ③ 터지지 않은 수포는 일부러 터트리지 않는다.	① 화상 부위 조임 증상 (부종 악화) ② 얼굴, 관절, 생식기 부위 화상 ③ 화상 환자는 파상풍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필히 병원 방문 해야함
척추를 다친 경우	① 머리, 목이 과도하게 젖혀지는 경우, 척추 손상을 의심할 것 ② 잘못된 응급처치는 사지 마비의 후유증을 남김 ③ 119 도착 전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	① 척추의 안정성이 확인되기 전, 환자의 자세를 바꾸거나 이송해서는 절대 안된다. ② 헬멧 제거 훈련이 안된 일반인은 헬멧을 벗기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① 통증이 심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② 팔다리의 감각 저하 및 운동 마비 증상의 경우 ③ 외관상 변형이 관찰되는 경우
손가락이 잘린 경우	① 통증, 심리적 불안감으로 쇼크 등 갑자기 쓰러지면서 2차 피해를 주의할 것 ② 깨끗한 물 또는 생리식염수로 세척, (절단면 X) ③ 절단된 부위를 깨끗한 거즈로 감싸고, 봉지 등 밀폐하여 통에 보관, 이때 얼음을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① 지혈제를 뿌리지 않는다. ② 물 또는 얼음에 신체부위를 직접 담그지 않는다. ③ 과도하게 오래 지혈대를 적용 하는 것은 오히려 신체부위의 접합을 방해할 수 있다.	병원 이송 / 내원 必
배와 가슴이 찔린 경우	① 박혀 있는 물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② 바로 누울 수 없다면, 옆으로 누운 자세로 이송 ③ 복부 관통상으로 내장 적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염수나 물로 거즈, 천 등을 적셔 감싸 습기 유지	① 물체가 박힌 관통상에 경우, 절대 빼지 않는다 ② 내장 적출 시 손으로 밀어 넣지 않는다. ③ 현장에서 말라 붙은 피를 제거하지 않는다.	병원 이송 / 내원 必
눈을 다친 경우	① 안구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절대 누르거나 비비면 안된다. ② 안구에 이물질이 박힌 경우, 안구운동을 최소화하여 병원으로 이송한다. ③ 환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시켜주어야 한다.	① 안구에 박힌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는다. ② 자가진단을 하지 않는다. ③ 코를 풀거나 기침을 하는 행위를 피한다.	① 눈이 흐릿하거나 잘 안보이는 경우 ② 눈동자가 잘 움직이지 않는 경우 ③ 안구 주위 뼈 골절 시, 미주신경이 자극 되어, 구토, 오심, 서맥 등 드물게 부정맥 등 실신할 수 있음
외상에 의한 쇼크	① 기도 보조(기도가 막히는 것 예방), ② 호흡 보조(가슴의 움직임 확인), ③ 순환 보조(위급시 심폐소생술 진행), ④ 장애 확인(의식, 통증자극을 통한 반응정도 확인) ⑤ 상처 확인 및 체온 조절(체온이 떨어지면 지혈이 잘 안되므로 옷 담요 등으로 따뜻한 환경을 조성)		

3.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 중대재해 대응 대·내외 담당자 업무 절차

구 분	담 당	업무 절차			비 고
대내대응 담당자	안전 담당자	1	재해발생보고서 작성	① 육하원칙의 경위 파악, ② 안전조치사항 확인, ③ 작업내용 확인, ④ 목격자는 어떻게 이 사고를 파악하고 있는지? (동료 종사자들의 사고 경위) – 전부 취합	
		2	사고 관련 자료 준비	-	첨부#3
		3	노동부, 경찰조사 대응	각 관공서별 서류 제출 현황, 피의자 심문조서 유무 등 전반적인 사항 컨트롤 (조사기간 : 3~6개월)	노무사 대응
		4	민, 형사적 합의 지원	법률 검토상 민사상 금액, 형사합의금 등 손해배상 금액 산출 → 종합·전략적인 의사결정 컨트롤	
대외대응 담당자	안전 관리자 노무 담당자 (경영지원본부)	1	유가족 사실 통보	빠른 시간 내, 사고 경위와 상황 설명, 이송 병원 통보	
		2	병원 동행, 의사 진단 파악	시신 병원 이송 동행 시, 의사의 [사망진단서 or 사체검안서] 발급 여부 확보 및 체크 - 사망진단서 발급 시 → 유가족 장례 지원 - 사체검안서 발행 시 → 검사 지휘 하, 1~2일 내 부검	
		3	부검 결과 체크	부검(2~3hr) : 부검의 → 형사, 부검 추정 소견 전달 시 동석 또는 담당형사에게 부검결과 체크	
		4	유가족 장례 지원	물품지원, 불편사항 해결, 행정업무 지원 등 최대한 지원	
		5	민, 형사적 합의 주관	대부분 발인 전, 민·형사적 합의 진행 - 적절한 보상금액에 대한 합의 합의 이행시 : 발인전 가합의서, 당사자간 가사인 상태에서 발인 합의 불이행시 : 장례 후 합의	- 법률자문 변호사고용

4. 중대재해 예방 관리

* 중대재해 대응 교육/훈련 계획

● 교육계획

교육 대상	교육 내용	실시 기준	교육 주체
관리 감독자	• 중대재해 발생시 관리 감독자의 역할 • 관리 감독자 기계·설비 체크 List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활용 / 각 현장 사무실 및 협력사 사무실 매뉴얼 비치	안전관리자 / 안전담당자
일반 사원	• 중대재해시 행동요령 • 피해 상황 유형별 대응 및 연락처		안전관리자 / 관리감독자 (정기안전교육시 또는 훈련과 병행)

● 훈련계획

훈련 대상		훈련 내용	실시 기준	훈련 주체
도상 훈련	관리감독자	• 중대재해 발생 상황 대응 도상 훈련 - 가상의 부서별로 시나리오를 예상하여 회의실 및 교육장에서 상황별 의사 결정 훈련	1회/년 (1hr/회)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대피 훈련	全 임직원	• 각 공정별, 2차재해 방지차 대피 훈련	1회/년 (30분/회)	관리감독자

4. 중대재해 예방 관리

* 교육 내용

교육 항목		교육 내용	대상자
중대재해발생 時 행동	상황실의 편성	• 상황실의 구성, 조직의 임무,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상황실, 각 부서의 연락 방법 (주간 조업, 야간 조업, 휴일인 경우) • 긴급 연락, 통보, 각 부서로 지시 전달 방법	상황실 구성원
	중대재해 발생시의 행동 기준	• 중대재해 발생시 행동 요령, 역할 (보고 및 조치, 현장에서의 응급 처리) • 해당 공정, 대피 안내	全 임직원
	정보,연락의 수단	• 공장내의 비상연락처, 비상연락 조직도 (주간,야간,휴일) • 연락 통신 방법 (휴대전화,방송설비,무전기 등)	全 임직원
기 타	구급 지식,구급용품의 사용	• 응급처치 요령 • 구급 용품 사용 방법	全 임직원

● 추진 일정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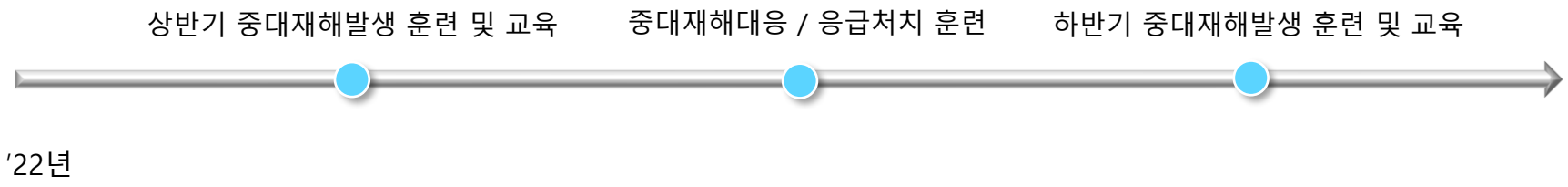

* 중대재해 현장 대응 훈련 시나리오

훈련상황	진행자	중대재해 발생 時
안내방송	방송	▶ 안녕하십니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 잠시 후 (사업장명) 중대재해 대응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 금일 실시하는 중대재해 대응 훈련은 해당 공정에 중대 재해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신속한 재해자 구출과 응급조치, 재해 현장을 보존하는 등 중대재해 피해를 줄이거나, 2차 사고를 방지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 이에, 중대재해 대응 훈련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께서는,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특히, 훈련 중에 이동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시작	방송	▶ 지금부터 (작업장명) 중대재해 대응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 훈련에 참가하는 모든 임직원은 하던 일을 멈추고 안내 방송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재경보음을 울린다(사이렌 취명)] ▶ [중대재해 재해자 발생] ▶ [관리감독자와 공정 내 주변 종사자가 설비의 가동을 비상중단하고, 재해자를 구출]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사고발생 전달] [안전관리자] ▶사내에 계신 임직원에게 알려드립니다. 현 시각 OO 공정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여 (N)명이 중상을 입는 등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해당 공정의 전체 종사자께서는 휴게실로 이동하여 주시고, 관리감독자께서는 현장을 보존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못된 정보 또는 불필요한 사항을 SNS 또는 언론매체에 전파 금지 말씀드리며, 타 부서 관리감독자께서는 목격자 진술 확보에 대해 업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종료	방송	▶ 훈련에 참가하는 모든 임직원은 모두 제자리에서 정렬하여 주십시오. ▶ 중대재해발생시 대피요령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기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요령 낭독 및 당부 말씀 ▶ 이상으로 (작업장명) 중대재해 대응 훈련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유가족 대응 절차

* 장례 지원 절차

절 차	담당자	세부 내용			비 교
장례식장 안내	**대외업무담당자 (노무 담당자)**	▪ 장례식장 안내 (유족 연락 및 식당, 숙소 확보 – 직원, 유족) ▪ 영안실 대기조 편성 (2~3일 장지 포함)			
절차 협의 및 지원		▪ 분향소 준비 (영안실 제상, 사진, 종교, 조화 등) ▪ 상조 용품 지원 ▪ 상조 도우미 지원 ▪ 재해자 유류품 전달			
유족 편의 제공		▪ 장례를 진행하는 동안,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최대의 편의 제공 ▪ 불편사항 해결 ▪ 행정업무 지원			
합 의		▪ 유족 대표와 합의 (통상적으로 발인전 합의) ▪ 합의금 협의 및 제시	가합의	사고이후 재해자 유가족들이 인감증명이나 호적등본등을 제시할 여유가 없으므로 일단, 가합의하여 합의금액과 합의금 지급일시를 결정	▪ 자문노무사 지원
			본합의	합의금 지급은 공증사무소에서 지급하고 합의서는 공증하여 법적효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5. 유가족 대응 절차

* 유가족 합의금 가이드라인

생명·신체 등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		예 시
산정(계산)방법	세부 내용	
호프만식 계산법	▪ 생명·신체 등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 대인배상 사고에서 피해자의 장래소득은 '총수입=앞으로 일할 수 있는 연수×(연평균 근로소득 - 생활비 · 세금 등)'의 식으로 산출된다. 한편, 피해자가 장래 거두게 될 총수입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것을 배상액으로 하는데, 그 이유는 향후 매월 순차적으로 얻게 될 소득을 미리 계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급일로부터 원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생기는 이자는 공제한다. 단리로 계산하는 방식을 호프만식 계산법, 복리로 계산하는 방식을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이라고 한다. 호프만식 계산법은 중간이자를 원금에 대해 생기는 것만을 계산하여 보상액에서 공제하고,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은 공제할 이자를 원금에 추가된 중간이자까지 가산한 총액에 대해서 계산한다. ★ 일할 수 있었을 연수 (연평균근로소득-생활비·세금 등) = 총수입.	**42세 대기업 부장 사례** **(1) 기초사실** ① 남자, 사고당시 42세, A전자 기획부장 ② 월평균 급여 금 4,200,000원 ③ 정년 55세 될때까지는 월평균 급여로 계산 ④ 55세부터 60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 (1일 금 40,922원, 월소득 금 900,284원=40,922×22일) ⑤ 생계비: 1/3 ⑥ 호프만계수 55세까지 (156개월) 호프만계수: 119.9863 55세부터 60세까지는 [사망시부터 60세(216개월)까지 호프만 계수-사망시부터55세(156개월)호프만계수] 153.8083-119.9863=33.822 **(2) 일실수익 계산방법** ① 55세 (정년퇴직시)까지 4,200,000×119.9863×2/3=335,961,640원 ② 60세까지 900,284원×33.822×2/3=20,299,603원 ③ 소계=①+②=356,261,243원 **(3) 총계** ① 일실수익: 금 356,261,243원 ② 위 자 료: 금 5,000만원 ③ 장 례 비: 금 300만원 ④ 총 계: 금 409,261,243원 ※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퇴직금이 금 1,438만원이었음. 따라서 퇴직금까지 추가하면 금 423,641,243원(퇴직금은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므로계산방법은 회사측에 정년까지 근무시 예상 퇴직금을 회사측에 알아보고 그 금액에서 사망으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빼면 됨)
라이프니치 계산법	▪ 무이자기한부 채권의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시기에 있어서, 그 현가를 산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채권의 명의액을 s, 변제기한까지의 연수를 n, 법정이율을 i라 하면, 현재 채권가액 $p=s/(1+i)^n$가 된다. 이는 소요의 현재가액에 대하여 현재 이후 변제기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자를 가한 액이 명의액과 같게 산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은 이자의 계산에 복리법을 사용하는데 비해, 호프만식 계산법은 단리법에 의하는 까닭에 정확도는 뒤지나 간편하여 파산법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망인(51세) 월 800만원의 소득을 얻고 있고 무과실일 경우라면 보험회사 약관상 일실이익은 800만원 × 86.8361(108개월에 대한 라이프니츠 계수) × 2/3(생계비 공제) = 463,125,866

6. 치유와 회복

* 산업재해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회복 관리 – 대응기 상담프로그램 운영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주관)

대응기	운영기간	대응기별 발생 증상	세부 내용	
긴급 대응기	재해 발생 후 7일 이전	침습 증상 및 수면장애 등 다양한 증상 발생 단계	▪ 사고 발생 직후의 시기이므로, 신체 부상 정도를 파악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치료를 받는 것이 최우선 ▪ 사고 경험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고, 악몽에 시달리는 등의 침습 증상과 수면장애 등 다양한 증상이 차츰 심해지는 단계이므로 심리적 응급처치와 같은 초기 안정이 목표 ▪ 사고현장 출입 자제, 심리상담이 가능하도록 여건 조성 ▪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일상생활 복귀 유도	*** 필수 상담 대상자** ▪ 직접 상해자 ▪ 최초발견자 ▪ 응급구조실시자 ▪ 사고현장 직간/접목격자 ▪ 같은 팀/라인 근무자 ▪ 재해자와 교대자 ▪ 기숙사 룸메이트 ▪ 재해자와 함께 장기 근무한 자 ▪ 재해자와 사적 친분도가 높은 자 ▪ 그 외 사내 사모임 회원 등 같은 조직에 있는자 ▪ 이 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초기 대응기	재해 발생 후 8일 이상~ 1개월미만	모든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고착될 수 있는 단계	▪ 목표는 수면장애, 주요 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 자살 등 모든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의 후유증을 예방하는 것 ▪ 사건 충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수조사 실시 ▪ 1차 심리상담을 위한 상담 대상자 선정 ▪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악화하는 경우 정신과 치료 연계,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일상생활 복귀 유도	
중기 대응기	재해 발생 후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으로 진단될 수 있는 단계	▪ 목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완화 및 다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후유증을 예방하는 것 추적관리와 2차 상담 실시에 협조 ▪ 최대한 빠른 현장 복귀를 위해 사업장 측과 상담사가 조율(예, 부서이동 등) ▪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악화하는 경우 정신과 치료 연계,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일상생활 복귀 유도	
후기 대응기	재해 발생 후 3개월 이후 (이상)	완전 호전 후 추적 관찰이 진행 되는 단계	▪ 목표는 모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후유증을 완화하는 것 ▪ 호전 단계이지만 완전히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적관리가 필요 ▪ 대부분 평상시 활동으로 전환되며, 최대한 일상 직장생활 복귀를 유도	

* 산업재해로 인한 '트라우마'예방 조치 및 운영체계

트라우마 관리를 위한 조직 내에서의 예방조치 사항

- 사업주, 관리자, 근로자는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활용하여 트라우마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할 것. 트라우마 관리에 대한 교육은 직무스트레스 관련 교육에 포함될 수 있음
- 재해 발생시 안전·보건관리자나 관리감독자 중에 트라우마 관리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필요시 근로자가 문의할 수 있도록 하고, 여건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연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할 수 있도록 상담 기관의 연락처를 게시
- 근로자와 상담사에게 사고 경위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사실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오해와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사고 후 약 1개월간의 심리적 변화가 근로자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유발될 수 있음을 주지하고 안내
- 시간의 흐름과 심리 상담을 통해 충격 회복이 눈에 띄게 나타나며 개인별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때 회복에 대해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언급해서는 안 됨
- 상담 종결 후 상담심리사는 '상담대상자의 사생활과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로 인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별 상담 내용을 알려줄 수 없음을 인지할 것

* 중대재해 발생시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운영체계

첨부 1. 사고 관련 자료 준비 리스트 (원/하청)

원청 준비 서류		하청 준비 서류
▪ 발주자 / 원도급 / 하도급 계약서	▪ 위험성평가 사전 회의록	▪ 근로계약서
▪ 원,하도급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시공계획서(안전작업계획서) 등	▪ 급여이체내역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선임계		▪ 근로내역신고내역(현장투입~사망일)
▪ 협력업체회의록사본		▪ 보호구지급대장
▪ 안전보건교육일지(교육이수자 명단)		▪ 망인의 안전보건교육이수 수첩
▪ 보호구지급대장		▪ 근재보험증권
▪ 작업일지, 출력일보		▪ 동료 근로자 및 종사자 인적사항,연락처
▪ 안전점검일지		
▪ 사고사진 및 사고상황도		
▪ 안전조치사항 입증사진		
▪ 작업계획서		
▪ 현장안전관리 조직도표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 재해발생보고서(목격자, 동료 근로자 및 종사자, 인적사항, 연락처)		
▪ 유해위험기계기구의 경우 정기검사증 등		
▪ 중량물 취급 작업의 경우 작업계획서		
▪ 사고경위서		
▪ 목격자 진술서 (문답형식)		
▪ 작업지휘자 및 팀장 진술서		
▪ 관리감독자 및 작업지휘자 지정서		

첨부 2. 산재 유족보상 합의서 양식

합 의 서

1. 합의당사자

"갑1"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갑2"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을1"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을2"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을3"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을4"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갑1"은 (주)대한민국의 대표이사이고, "갑2"는 사망한 근로자 ○○○의 동료근로자이며, "을1"은 "갑"의 사업장에서 근무중 20 년 월 일 발생한 업무상재해로 20 년 월 일에 사망한 근로자 ○○○의 미망인이고, "을2"와 "을3"는 자녀이며, "을4"는 부친으로 상기 당사자들은 본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이하 "갑1", "갑2"는 "갑"으로, "을1", "을2", "을3", "을4"는 "을"로 명칭한다.

2. 합의내용

가. "갑"은 "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속하게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나. "갑"과 "을"은 "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유족급여(일시금기준) 및 장의비와, 유족급여 이외의 민사상 일식 수익금 및 위자료와 기타 손해금을 모두 합친 합의금을 一金○○○원(○○○)으로 한다.
다만, "갑"이 기 지급한 장의비에 대해서는 "을"이 "갑"에게 수급권을 위임하여 "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도록 한다.

다. 전항의 합의금액에서 "갑"은 "을"이 산재보험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확정된 유족급여(일시금기준) 및 장의비를 제외한 금액을 "을"의 유족급여(유족연금)수급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을1"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지급하기로 한다.

라. 전항의 합의금이외에 "갑1"이 사망한 근로자 ○○○를 수익자로 가입한 단체상해보험(한국화재)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갑1"이 수급권을 가진다.

마. "을"은 상기 합의금을 수령한 이후 "갑"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나 청구를 일체 제기할 수 없다. 만약 본 합의를 위반하여 "갑"에게 피해를 가했을 경우 "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상기와 같이 "갑"과 "을"이 충분히 이해하고 본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 2통을 직접 쌍방 날인 후 공증을 필한 다음 각각 1통씩 보관한다.

합의일 : 20 년 월 일

갑1 : _____(인)

갑2 : _____(인)

을1 : _____(인)
을2 : _____(인)
을3: _____(인)
을4: _____(인)

첨부양식

산재유족보상

첨부 3.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 ]민간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⑦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추가로 적습니다.

Ⅱ.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국적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⑪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년 월	
	⑬고용형태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⑭근무형태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⑮상해종류 (질병명)		⑯상해부위 (질병부위)		⑰휴업예상일수 휴업 [ ]일
					사망 여부 [ ] 사망

Ⅲ.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⑱ 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 ]년 [ ]월 [ ]일 [ ]요일 [ ]시 [ ]분
		발생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⑲재해발생원인		
Ⅳ. ⑳재발방지 계획			

※ 위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기인물 □□□□□
	작업지역·공정	□□□	작업내용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가입번호를 적고 사업장등록번호 기입란에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적습니다.

※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②사업장명 : 재해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휘·명령을 받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예: 아파트를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의 하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가 실제로 하수급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수급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③근로자 수: 사업장의 최근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정규직, 일용직·임시직 근로자, 훈련생 등 포함).

④업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명과 주요 생산품을 추가로 적습니다.

[예: 제철업, 시멘트제조업, 아파트건설업, 중작기계도매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중식음식점업, 건축물 일반청소업 등]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원도급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도급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⑦원수급 사업장명: 재해자가 소속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이 하수급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원수급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⑨공사 종류, 공정률, 공사금액 : 수급 받은 단일공사에 대한 현황이 아닌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 현황을 적습니다.

가. 공사 종류: 재해 당시 진행 중인 공사 종류를 말합니다. [예: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도로, 공장, 댐, 플랜트시설, 전기공사 등]

나. 공정률: 재해 당시 건설 현장의 공사 진척도로 전체 공정률을 적습니다.(단위:공정률이 아님)

Ⅱ. 재해자 정보

⑩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류자격(기호)을 적습니다.(예: E-1, E-7, E-9 등)

⑪직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알고 있는 직업명을 적고,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직위를 추가로 적습니다.

[예: 토목갈리기술자, 전문간호사, 인사 및 노무사무원, 한식조리사, 철근공, 미장공, 프레스조작원, 선반기조작원, 시내버스 운전원, 건물내부청소원 등]

⑫같은 종류 업무 근속기간: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부터 현직 경력(동일·유사 업무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적습니다.(질병의 경우 관련 작업근무기간)

⑬고용형태: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타인과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형태를 적습니다.

가. 상용: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임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다. 일용: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라. 자영업자: 혼자 또는 그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

마. 무급가족종사자: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

바. 그 밖의 사항: 교육·훈련생 등

⑭근무형태 : 평소 근로자의 직업 수행시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적습니다.

가. 정상: 사업장의 정규 업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통상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전후에 퇴근하는 것) 사이에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2교대, 3교대, 4교대: 격일제근무, 같은 작업에 2개조, 3개조, 4개조로 순환하면서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시간제 : 가목의 "정상" 근무형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당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 동안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 그 밖의 사항: 고정적인 심야(야간)근무 등을 말합니다.

⑮상해종류(질병명): 재해로 발생된 신체적 특성 또는 상해 형태를 적습니다.

[예: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중독·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혈압, 뇌졸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 등]

⑯상해부위(질병부위): 재해로 피해가 발생된 신체 부위를 적습니다.

[예: 머리, 눈, 목, 어깨, 팔, 손, 손가락 등, 척추, 복부, 다리, 발, 발가락, 전신, 신체내부기관(소화·신경·순환·호흡배설) 등]

※ 상해종류 및 상해부위가 둘 이상이면 상해 정도가 심한 것부터 적습니다.

⑰휴업예상일수: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적습니다.(추정 시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

Ⅲ. 재해발생정보

⑱재해발생 개요: 재해원인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발생일시[년, 월, 일, 요일, 시(24시 기준), 분], 발생 장소(공정 포함), 재해관련 작업유형(누가 어떤 기계·설비를 다루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재해발생 당시 상황(재해 발생 당시 기계·설비·구조물이나 작업환경 등의 불안전한 상태(예시: 떨어짐, 무너짐 등)와 재해자나 동료 근로자가 어떠한 불안전한 행동(예시: 넘어짐, 까임 등)을 했는지)을 상세히 적습니다.

[작성예시]

발생일시	2013년 5월 30일 금요일 14시 30분
발생장소	사출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공정에서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자 000가 사출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자가 점검중임을 모르던 동료 근로자 000가 사출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 사이에 재해자가 끼어 사망하였음

⑲재해발생 원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인(기계·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정비의 부족 등), 작업·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매뉴얼의 불비·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을 적습니다.

Ⅳ. 재발방지계획

⑳ "19. 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적습니다.

해석지침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해석지침

첨부양식

산업재해조사표(개정完)

첨부 4. 유족 급여신청서 양식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19. 8. 12.>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유 족 급 여
[ ] 진폐유족연금 청 구 서
[ ] 장 의 비

※ 공통란은 모두 기재하시고, 해당 신청란에 [✔] 하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0일

사업장	사업장 관리번호 □□□-□□-□□□□□-□ 사업개시번호( )	사업장명	소재지
재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직종
	재해발생일 □□□□년 □□월 □□일		채용년월일
유족급여	수급방법 [ ] 연금 [ ] 일시금 [ ](일시금,연금)×1/2		
	재해발생원인 및 상황 ※ 최초 유족급여 청구에만 기재하며,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하여 주십시오.(별지 첨부)		
	구비서류	1.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사인미상인 경우 사체부검소견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은 공단 직원이 확인하며,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장의비	장제실행자 성명	사망자와의 관계	장제실행일 / 비용
미지급 보험급여	산재근로자가 사망하기 전에 청구하지 않은 보험급여가 있으면 청구하시겠습니까? 예( ) 아니오( )		

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 (예금주 :)

□ 보통계좌 □ 보험급여 전용계좌(희망지킴이)

※ "희망지킴이"는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를 말하며, 기 등록된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사항				
	① 이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② 배상 또는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그 내역(①에서 "예"라고 체크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수령일자	수령금액	지급한 자	첨부서류
				합의서, 판결문, 영수증, 기타서류 등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선택사항)

공단의 부가서비스 홍보와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안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니 아래의 내용을 읽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이용 내역

이용 목적	이용 항목	이용기간
홍보문자, 전자우편 전송, 감사편지 발송 등	성명, 연락처(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5년

※ 위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홍보자료 및 사은품 수령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으며, 위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및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 아니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보험급여 결정에 관한 통지 등 민원접수 처리결과 안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개인정보 동의와 무관하게 통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유족급여, 진폐유족연금, 장의비, 미지급보험급여) 청구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뒷면><개정 2019. 8. 12.>

안 내 문

1. 유족급여 지급방법

▣ 연금지급이 원칙 [평균임금*365일*(52~67%)/12월] 상당액 매월 지급)이며 50% 일시금 지급은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일시금(평균임금 1,300일분 상당)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 하고 유족보상 연금은 50% 감액하여 지급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및 순위>

※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 중
1) 배우자(사실혼 포함)
2)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3)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자 또는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자,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자
4)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이 제 2급 이상인 자 (시각장해인인 경우 제 3급인자도 해당됨)

※ 받을 권리의 순위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유족 중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사망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일 경우 또는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

<유족보상 일시금 수급권자 순위>

1)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2)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 부모에 있어서 양부모를 우선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 양부모의 부모를 우선 순위로 함.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서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름

2.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

▣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 수급자격자가 재혼한 때 (사망근로자의 배우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
▣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끝난 경우
▣ 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경우
▣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이었던 자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연금의 수급자격을 잃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등

▣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새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같은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따라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 달 분부터 그 행방불명 기간 동안 그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법 제62조제2항 및 법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하며, 이 경우 행방불명된 종전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법 제62조제2항 및 법 별표 3에 따른 가산금액이 적용되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보지 않음
▣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음

※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첨부양식

유족급여 신청서

첨부 5. 요양급여 신청서 양식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8. 12.> <개정 2020. 12. 29.>

※ 해당란에 |✓| 하고 기재하십시오. (앞 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① 성명(외국인은 영문명)	②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③ 재해일자 □□□□년 □□월 □□일
④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년 월 일 (:) | |본원 | |타 의료기관( )	
⑤ 본원에 최초 도착일시	년 월 일 (:)	
⑥ 내원방법	| |도보 | |구급차 | |구급차외 차량 | |기타( )	
⑦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⑧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환자가 진술하는 대로)	년 월 일 (:) 최초 발생	⑨ 재해 당시 의식소실(| |유 | |무)
	증상의 내용	
⑩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환자의 표현대로)		
⑪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주요 이학적·도수 검사 등) ※ 상세 소견은 별지 사용 가능		

⑫ 주요검사

[ ]X-Ray [ ]CT [ ]MRI [ ]MRA [ ]심장혈관조영술 [ ]Bone scan [ ]PET

[ ]초음파 [ ]내시경 [ ]관절경 [ ]근(신경)전도 [ ]폐기능 [ ]조직 [ ]적외선체열

[ ]정신상태 [ ]심리학적 [ ]기타·특이사항( )

※ 주요소견 기재 또는 결과지 첨부

⑬ 기존(기초)질환

고혈압(| |유 | |무) 협압약(| |미복용 | |부정기복용 | |정기복용) 고지혈증(| |유 | |무) 상병관련 가족력(| |유 | |무)

당뇨(| |유 | |무) 당뇨처로(| |미복용 | |약물복용 | |인슐린) 결핵(| |유 | |무) 간염(| |유 | |무)

| |기타·특이사항( )

재해 전 본원에서 유사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여부 | |유 | |무

기타·특이사항(입사·시술명·부위·의료기관)

⑭ 상병명과 상병코드

상해코드	주/부/파생	상병코드(KCD기준)	세부상병명(확정진단 병명)

(상해코드) 두부(뇌/두개골/두피), 눈, 귀(내/외부), 안면부, 목, 팔, 손/손가락, 가슴/등, 허리, 엉덩이, 다리, 발/발가락, 복합부위, 순환기관, 호흡기관, 소화기관, 비뇨/생식기관, 신경계통, 복부, 전신, 기타 중에서 상병코드별 하나씩 기재

(주/부/파생) 주상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에 따라 주된 병태에 해당하는 하나의 상병코드에 대해서만 가능

(상병코드) 확진(최종) 진단명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속하는 최하위 코드로 코딩하여야 하고, 병태의 외인을 설명하는 부연코드(대분류 코드가 V, Y, Z인 것)는 산재보험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상병의 병태에 해당하는 코드로 코딩

(오류예시) 하나의 상병으로 코딩할 수 없는 여러 상병을 하나로 표시하는 것, 질병 또는 손상에 의한 상병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대분류 M코드를 손상으로(또는 S코드를 질병으로) 코딩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뒷 면)

⑮ 입원	예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
	사 유	[ ]수술 [ ]의식장애 [ ]외·기기고정 [ ]석고붕대고정 [ ]절대안정 [ ]안정 및 보호 [ ]이동불가 [ ]기타
⑯ 통원	예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
	사 유	
	취업치료 여부(근무 병행치료)	※ 취업치료(근무 병행치료)는 치료받으면서 근무가 가능한 상태를 말함(의학적 판단) [ ]취업치료가능 [ ]취업치료 불가능 : 향후 ( )개월 후 가능성 재판단
⑰ 수술	수술여부	| |없음 | |있음 수술명
	수술(예정)일	년 월 일 수술의료기관 | |본원 | |타원( )

⑱ 계속 등판 치료가 필요한 기존질환명

⑲ 집중재활치료의 필요 구분

(※**재활인증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전문재활치료**로서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⑦6개월 이내의 뇌혈관, ⑧8개월 이내의 척추·견관절·주관절·완관절·수부·고관절·슬관절·족관절·족부질환자, ⑨해당기간 도과했으나 재활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사람에게 제공, 단, 염좌, 타박상 등 경미한 상병은 제외)

| |일정기간 집중재활치료 관란 | |3개월 이내 치유 또는 13급 이하의 장해 예상

| |집중재활치료 필요(또는 예정) | |집중재활치료 질환자 아님

| |상태 악화 또는 수술 예정 | |집중재활치료 불필요( )

협진, 병행진료가 필요한 진료계획		심리상담 필요 (개인별 심리상담 지원)	| |필요

전원

전원할 의료기관명: 소재지:

전원사유:

※전원이란 생활근거지 또는 전문적 치료 등을 위해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원(예정)일자	년 월 일

<첨부서류>

1. 신청 상병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검사자료 및 결과지 각1부.
2. 절단, 화상, 작열창, 욕창은 환부 칼라사진
3. 정신질환의 경우 진단의 근거를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응급진료 또는 초진기록지 등 의무기록 및 각종 검사 결과지 각1부.(뇌영상 검사, 뇌파 검사, 심전도 검사, 정신상태 검사, 심리학적 검사, 감상신 기능검사 등)

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의료기관명: (서명 또는 인)

■ 산재관리의사 여부: | |산재관리의사 | |해당없음

의사면허번호: 호

전문과목: (전문의: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자문의사 소견

년 월 일 자문의사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첨부양식

요양급여 신청서

첨부 6. 보상관련 입증서류 준비 리스트

NO.	업무	처리 내용	비 고
1	합의금 지급 (가지급)	합의금 전체 지급 수준을 먼저 결정, 전체 합의금 중 장의비 선 지급, 차액은 유가족이 다음 서류를 준비하면 공증 후 지급토록 선 합의 인감증명서(유족보상금,장의비 위임용,합의각서 공증용 3부), 주민등록등본 사망 전 및 후 각3부, 인감증명서 산재수급권자 및 상속권자 각 3부, 호적(제적)등본 3부, 인감도장 : 산재수급권자 및 상속권자	
2	보상금수령	**·합의금 전액을 선 지급, 보험급여를 회사에서 대체 청구** **·보상금 청구 서류구비 제출** ① 합의서, 유족보상금 일시금 및 장의비 청구서, 산재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서 1부 ② 산재보험급여대체 지급증명원 1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부 ③ 수급권자 호적등본(사망 기록된 것), 수급권자 주민등록등본 (사망 기록된 것) 1부 ④ 수급권자 인감증명서, 장제실생 확인서, 보상금 지급 영수증 1부 ⑤ 평균임금 산정 내역서 2부,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노임)대장 사본 (사망직전 4개월분) 1부 ⑥ 목격자진술서, 작업일지 사본, 도급계약서·하도급계약서, 사망사실확인서	근로복지공단